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현장별보증 약관

제1조(보증책임)

① 건설공제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체결하고 조합이 제2조에 따라 개별확정한 건설기계대여계약(이하 "개별확정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무자가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그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조합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 공동계약인 경우 개별확정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보증사고)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개별확정)

① 조합은 채무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정하여 게시(이하 “개별확정”이라 한다)하고, 개별확정한 내용을 보증채권자인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1. 보증채권자로 확정된 건설기계대여업자
2.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금액의 한도(이하 “개별확정금액”이라 한다)
3.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이하 “개별확정기간”이라 한다)
4. 그 밖에 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조합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를 통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터넷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제출(영업점방문 및 등기우편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개별확정금액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 제4항 제2호 각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④ 제1항 제3호의 개별확정기간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의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일에 90일을 가산한 날까지로 합니다.

⑤ 제1항의 게시 또는 통보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조합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시
2.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연락처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통보(부득이한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우편 통보)

⑥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개별확정하지 않습니다.

1. 채무자에게 당좌거래정지, 기업회생신청, 파산, 건설업등록말소,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해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조합이 인지한 경우
2.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의 개별확정계약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이 보증사고 발생사실을 조합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3. 현장별보증의 보증잔액(이 보증서의 현장별보증의 보증금액에서 이미 개별확정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이 개별확정할 건설기계대여계약서의 개별확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4. 개별확정기간의 종료일이 이 보증서의 보증기간 종료일을 경과하는 경우

제3조(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2.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
3. 보증서를 보증목적(주계약내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개별확정계약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계의 대여 계약이 아닐 때
5. 채무자에게 건설기계가 인도되기 전에 건설기계대여계약이 해지된 때
6. 조합이 보증사고발생으로 이 보증의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때
7. 제7조제3항 또는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① 조합이 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개별확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건설기계대여계약의 사용기간 개시일로부터 사용기간 종료일까지 각 보증채권자의 실제 기계대여로 발생한 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인정되는 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보증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법령에 따라 원도급의 발주자 또는 채무자의 상위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건설기계대여대금의 금액
2.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 할인료 등의 이자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이자금액
3. 보증사고 발생 후 보증채권자의 계속 대여로 생긴 건설기계대여대금의 금액
4. 채무자 등의 인정여부에도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실제 시공에 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
5. 대금 지급기일(어음 등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내에 도래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채무

③ 조합은 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제2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개별확정되지 않은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하여 현장별보증의 보증금액에서 개별확정된 모든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보증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되 조합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손해의 방지 및 경감 의무)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의성실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개별확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증서의 효력상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보증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개별확정된 이후 보증채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2. 개별확정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으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제7조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조합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개별확정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또는 대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2.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
3. 선금 또는 대금 수령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합으로부터 통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령여부, 작업내역 및 대금수령내용(어음인 경우 어음사본 첨부)의 사실
4. 조합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때

②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금청구문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사고의 사유 및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채무자가 확인한 작업일보 및 작업확인서 등 보증금 청구금액에 관한 정당한 입증서류
2. 그 밖에 보증사고 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

③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의무와 제2항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게을리 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증사고 발생시 대여대금 인정기준)

제4조 제1항의 각 보증채권자의 실제 기계대여로 발생한 대금의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조합이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원도급의 발주자(자체사업의 경우 감리자,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채무자가 확인한 작업일보 및 작업확인서, 공사내역서 등의 자료
2. 개별확정계약의 계약문서 등

제9조(보증채무의 확인조사)

① 조합은 제7조제1항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등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일보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증금 지급시기)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받아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1조(대위 및 구상)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

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보증금 지급전이라도 위의 서류제출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협조 또는 조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었을 금액 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하거나 이를 조합이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관할법원 및 준거법)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 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